

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
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건설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·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조달 시스템등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을 제한하고,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한 임금의 대리수령을 제한하고,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(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)

나. 고용인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로만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7조제6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공정건설지원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
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

- 전자우편 : hc72@korea.kr

- 팩 스 : 044-201-5548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(전화 044-201-357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